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임명절차 관련 입법미비 보완>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61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18.
3. 회부연월일 : 2025.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합참의장을 대통령이 장성급 장교 또는 참모총장을 지낸 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성급 장교는 보직을 면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면 전역하여야 함.

그런데 통상의 군 인사는 동시에 이뤄지므로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장성급 장교는 기존 보직을 잃은 상태가 되어 현행법에 따르면 전역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이미 몇 차례 국회에서 지적된 바 있음.

이에 합참의장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되거나 지명철회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나마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합참의장 후보자는 장성급 장교 정원의 예외로 두어 합참의장 인사로 인한 불확정성과 군 지휘권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장성급 장교가 현행법상 전역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 조항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생략) <u><신 설></u>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현행과 같음) <u>② 장성급 장교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경우 지명이 철회되거나 임명되기 전까지는 제16조의2제2항의 예외로 하며, 제1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해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u>
<u>② ~ ④</u> (생략)	<u>③ ~ 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현행법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장성급 장교가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음¹⁾.

1) 「군인사법」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등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

□ 합동참모의장은 현역 군인 중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며, 지명 후 임명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라는 비공식적 신분에 머무름.

그러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군의 정식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는 법 제16조의2제2항²⁾상 전역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임명 이전에 전역 처리되어야 하는 법적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3년 제44대 합동참모의장 인사청문회³⁾에서도, 합동참모의장이 지명된 이후 대통령의 임명 전까지 보직 공백이 발생하여 전역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 이처럼 현행법상 전역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역되지 않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법령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

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2) 「군인사법」 제16조의2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3)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 (2023.11.15.)

□ 다만, 개정안은 법 제16조의2에서 장성급 장교만 규율하고 있으나, 합동참모의장의 경우 각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이후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제44대 합동참모의장처럼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여 바로 보직되는 사례 역시 존재함.

실제 보임 이전까지는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라는 비공식적 신분
에 머무르게 되므로, 법 제19조제4항⁴⁾ 및 제20조제3항⁵⁾에 따라
전역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바, 해당 규정들 또한 적용되지 않도
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8조 (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성급 장교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경우 지명이 철회되거나 임명되기 전까지는 <u>제16조의2제2항의 예외로</u> 하며, 제1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해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8조 (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제16조의2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역을</u> 보류하며, ----- ----- -----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4) 「군인사법」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5) 「군인사법」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각군 참모차장
2.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③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서

- 국방부는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신분을 명확히 보장하고, 이전 직위에 상응하는 계급의 후임자를 즉각적으로 보충함으로써 지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참모총장 및 중요 부서의 장에 대한 전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 전역된다.

※ 참고자료: 역대 합동참모의장 인사청문회 연혁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부 칙 <법률 제8584호, 2007. 8. 3.> ③ (합동참모의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097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법률 제8134호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국회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합동참모의장 대상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역대 합동참모의장]

역대 합동참모의장	군종	인사청문회 일자
제34대 김태영	육군	2008.3.26
제35대 이상의	육군	2009.9.24.
제36대 한민구	육군	2010.6.30.
제37대 정승조	육군	2011.10.25.
제38대 최윤희	해군	2013.10.11.
제39대 이순진	육군	2015.10.5.
제40대 정경두	공군	2017.8.18.
제41대 박한기	육군	2018.10.5.
제42대 원인철	공군	2020.9.18.
제43대 김승겸	육군	인사청문회 미 실시 ⁶⁾
제44대 김명수	해군	2023.11.15.

6) 제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해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제출부 기한(2022.6.29.) 도과